

2022년 글로벌협력의사(8기) 모집안내문

2022. 12. 16.(금)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인재사업실

- 차 례 -

1. 모집 개요
2. 지원 자격
3. 선발 절차
4. 선발 일정
5. 제출 서류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7. 문 의 처

붙임1. 글로벌협력의사 직무기술서

붙임2. 글로벌협력의사 등급 산정 기준 및 직접지원비 지급 기준

붙임3.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2022년 글로벌협력의사(8기) (KOICA Global Doctor) 모집 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대표로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현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및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의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글로벌협력의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 인원 : 6명
- 파견 기간 : 2년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파견 시기 : 2023년 5월 말부터 순차적 파견
- 파견 국가 : 6개국
 - 아 시 아 :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 아프리카 : 카메룬, 탄자니아
 - 중 남 미 : 볼리비아
- 모집 분과 : 6개 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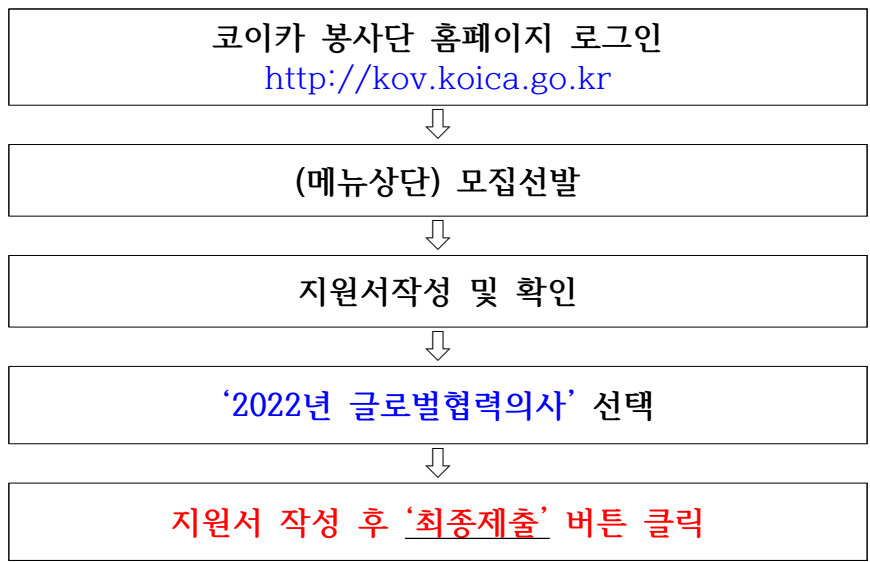
분 과	파견국가	분 과	파견국가
감염내과	볼리비아	외 과	탄자니아
소아청소년과	라오스	응급임상외과	카메룬
정형외과	방글라데시	이비인후과	베트남

- ※ 자세한 내용은 **‘수요 총괄표’ 및 ‘파견 기관별 수요조사서’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파견 국가는 파견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협력의사가 미파견 국가 및 KOICA 파견 인력이 많은 국가를 우선 파견할 예정으로, **희망국가와 다른 국가로 파견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혹은 파견 지역 공용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 해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신용조회 및 신체검사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용여권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코로나 확산 대비를 위하여, **백신접종(개량백신 및 부스터샷) 완료자 및 기저 질환 미보유자**에 한함
- (우대) ODA 자격증 소지자

3 선발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
 -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 여부 점검
- 2차 전형 : 면접 및 적합도 검사
 - 지원 분과 전문지식 및 지원자의 기본 소양 평가 및 외국어 능력 검증

- 신체검사 및 서류 제출
 - (대 상) 2차 전형 합격자
 - (신체검사)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2차 재검진 추가 진행
 - (서류제출)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국내 교육 대상자 선발
 - **신체검사, 신용조회 결과 및 파견 기관 동의 조회** 완료 후 특이사항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국내 교육 대상자 선발

4 선발일정

구 분	세부일정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포함)	2022. 12. 16.(금)~2023. 1. 16.(월)
서류합격자 발표	2023. 2. 8.(수)
적합도검사	2023. 2. 9.(목)~2. 13.(월)
면접전형	2023. 2. 25.(토) ※상세 일정 별도 공지 예정
면접합격자 발표	2023. 3. 7.(화)
서류 제출 및 신용조회	2023. 3. 7.(화)~3. 13.(월) 까지 영문 지원서 및 추가서류 제출(질병·병력확인서 등)
신체검사	2023. 3. 10.(금)~3. 16.(목) 재검 2023. 3. 23.(목)~3. 29.(수)
파견기관 동의	2023. 4. 4(화)~4. 17(월)
국내교육대상자 발표	2023. 4. 25.(화)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2023. 4. 25.(화)~4.27.(목)
국내교육	2023. 5월중순
해외파견	2023. 5월말부터 순차 파견

- ※ 상기 일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 각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제반 안내사항은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서류	제출 형태	참 고 사 항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모두 제출
병적증명서		* 남자 지원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발급
질병·병력 확인서	원본 1부	* 양식은 추후 제공
경력 증명서		* 지원 분과 관련해서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면허증/자격증 모두 제출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6 유의사항 (필독)

구 분	유의사항
지원 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개도국의 파견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파견 일정이 지연, 파견 취소 혹은 파견 국가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후, 개인 변심에 의해 파견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 이미지 저하 및 외교적 마찰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형의 KOICA 파견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사전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입교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p>지원서 작성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자격증, 면허증은 지원 분과와 관련된 사항 중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 국가 및 기관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 선발 과정에 따라 희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 영문 지원서는 국문 지원서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문 지원서는 “한글”로, 영문 지원서는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중에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도록 “임시저장”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 제출” 을 눌러야만 지원이 완료되며, 최종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p>백신접종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 BA1, BA4, BA5 개량백신(2가백신) 필수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의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으로 접종 가능) - 만 60세 미만 부스터샷 접종 필수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국내교육 기간 내 코로나 백신접종(개량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 제출 불가 및 거부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국내교육 (온/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시점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파견에 필요한 소정의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작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기관의 심사 결과로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수원 기관 미동의 시 파견이 불가합니다. ○ 국내 교육 입교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파견 대상자로 분류되어 글로벌협력의사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파견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 교육 미 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교육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발각된 경우, 또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글로벌협력의사에게는 아래의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귀국 : 항공권, 이전비, 관용여권 등 - 생활 경비 : 직접지원비(직접인건비, 가족수당, 주거비 등) - 활동 경비 : 출장비, 현장사업비, 활동지원비, 현지어학습비 - 건강/안전 :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긴급후송 서비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

7 문의처

- 글로벌인재교육원(서울) 코이카봉사단 모집상담파트
 - 주 소 : (우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5-18(구 염곡동 304-3)
글로벌인재교육원(서울) 코이카봉사단 모집상담파트
 - 전 화 : 1588-0434
 - 위 치 : 글로벌인재교육원(서울) 1층 코이카봉사단 모집상담파트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휴무),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끝.

붙임1 **글로벌협력의사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글로벌협력의사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1.임상의학 03.기초의학 04.임상지원	-
	01.사업관리	01.사업관리	01.프로젝트관리	01.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보건분야)
채용전형 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수원 기관 동의 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 합격)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진단 ○ 검사 및 시술 ○ 치료 및 수술 ○ 의료 기술 자문 ○ 의료 인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사업 사업기획 ○ 공적개발원조사업 PDM 수립 ○ 공적개발원조사업 총괄 운영 관리 	
직무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국가 의료 인력 교육 ○ KOICA 파견 인력 안전 및 건강 관리 ○ 파견 기관과 협의하에 부여된 업무 ○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 사업 기획/운영/정산 등 ○ 기타 파견 국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직종에 대한 의료 지식 및 환자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지식 ○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처치에 필요한 각종 술기 및 수술 기술 ○ 다문화 이해 능력 ○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외국어 독해 능력 ○ 보고서 작성 능력 (정산 포함) ○ 목표 목적을 수립하는 능력 ○ 사업 환경(이해관계자, 문제)을 분석하는 능력 ○ 계획 정보 수집을 위한 각 관리 영역별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직무 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한 자세와 의사 윤리의식에 따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 ○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태도 ○ 분석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노력 			
직무연관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자격증 ○ 의사 면허증 			
참고사이트	https://ncs.go.kr			

붙임2 **글로벌협력의사 등급 산정 기준 및 직접지원비 지급 기준**

1. 글로벌협력의사 등급

등급	자격 요건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면허증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분야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공공기관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16년 이상 경력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면허증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 - 보건 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경력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 의사 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분야 5급 이상 공무원 - 보건 의료분야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보건 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 분야 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의사의 석, 박사학위는 별도의 경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 직접지원비 지급 기준

가. 직접인건비 지급 기준

등급	1급	2급	3급	4급
직접인건비	330,000원	270,000원	220,000원	190,000원

※ 1일 기준 금액으로 월 최대 22일까지 지급

나. 주거비 지급 기준 (2020년 12월 개정)

지역	국가	주거비 상한액
		단위 : US\$/월 또는 현지화/월
아시아	라오스	\$2,700
	베트남	\$3,700
	방글라데시	\$3,000
아프리카	카메룬	1,809,528(현지화/월)
	탄자니아	\$3,800
중남미	볼리비아	\$2,400

※ 주거비 : 상한액내에서 실비 지급

다. 가족수당 지급 기준 (협력단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준용)

구 분	배 우 자	자 녀 (1인당)
지급액	해외근무수당 × 1/4	60 (US\$/월)

※ 배우자 및 자녀가 취업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자 가족수당 미지급

붙임3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구분	상세내용
일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치아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턱관절 강직(強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부전증(心不全症) •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礙) •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관상동맥질환 • 폐성심(肺性心)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생식비뇨기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내분비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구분	상세내용
<p>혈액 또는 조혈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 재생불량성 빈혈 •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증가증 • 백혈병
<p>신경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종양 및 척수종양 - 외상성 신경질환 -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뇌전증(腦電症)
<p>사지(四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p>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p>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p>정신 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검사 등) •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

※ COVID-19 상황에 따라 일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